

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전승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6. 2. 2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
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684호로 2026년 1월 19일 전승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
라.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, 회의(안 제5조 ~ 제7조)

마. 준용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기통신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6. 1. 20.~2026. 1. 25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 및 건축물 주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·방송·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,
 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 관리기관이 정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- 한편,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비 미흡, 해지 회선의 미철거 등으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누전·감전·정전·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주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- 이에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
 - 『제1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(2016~2020)』 , 『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(2021~2025)』 에 이어 『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(2026~2030)』 (이하 “제3차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단계적으

로 추진하고 있음.

- 한편, 제3차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'평가 및 환류'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임.
 -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·보통·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, 미흡 등급 지자체의 정비물량 30%를 삭감하여 우수 등급 지자체에 재배정할 예정임.
 - 또한, 3차 계획 기간(5년간) 동안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총점 하위 약 10%(6개) 지자체에 대해서는 4차 중장기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비물량의 50%를 삭감하고, 이를 신규 참여 지자체 또는 서울·광역시 외 지역에 재배분할 계획임.
 -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물량이 조정되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,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뒷받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.
- 또한,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및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,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나 역할이 제한적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고, 민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‘공중케이블’과 ‘공중케이블 정비사업’의 개념을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, 그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정비가 아닌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안 제4조(지원계획 수립)는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, 정비 구역의 실태조사, 정비 완료 후 평가, 홍보 및 민원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,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.
- 안 제5조(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)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구의원, 지역 주민,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안 제6조(협의회의 기능)는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민원 및 의견 제시, 정비 의뢰, 정비 추진을 위한 협조·지원 등의 기능을 규정하여, 협의회가 소통 창구이자 민관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7조(협의회 회의)는 협의회의 회의 소집, 개최 주기,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

하고, 정기적·수시적 논의를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,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 - 중앙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물량이 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바, 지원계획 수립·시행을 통해 영등포구의 행정적 대응 역량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,
 -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전기통신사업법

제35조의2(공중케이블 정비의무)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 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(이하 이 조에서 “공중케이블”이라 한다)을 정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8. 12. 11.>

1.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공중케이블의 설치·철거 및 재활용 기준
3.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
4.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

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,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·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